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5,266,724	16,358,002
일반회계	494,435,648	14,833,069
특별회계	50,831,076	1,524,932
공기업특별회계	36,116,319	1,083,49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9,496,140	584,88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620,179	498,605
기타특별회계	14,714,757	441,443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998,988	59,970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9,799,265	293,978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857,319	55,720
신정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	701,905	21,057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57,280	10,71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4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16,349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